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

www.namwon.go.kr

선	기관의 장
람	

제 41 호

2015. 4.20(월)

회					
람					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9

남원시 공고 제2015-555호

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황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4월 20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

1. 제정이유

남원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우수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(안 제4조 ~ 안 제8조)
- 나. 근로자 등의 복지지원(안 제9조 ~ 안 제11조)
- 다. 기업 활동 지원(안 제12조 ~ 안 제14조)
- 라.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(안 제15조 ~ 안 제17조)
- 마. 기업지원활동 협의회 운영(안 제18조 ~ 안 제24조)
- 3. **조례 제정안** : 덧붙임

4. 의견제출

-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**2015년 5월 11일**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 제출 사항
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 - 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) 590-701

남원시 시청로 60(도통동 518) 남원시 경제과
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063-620-6712) 및 직접방문 등

5. 기타

○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경제과(☎063-620-635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

제출년월일: 2015. 4. .

제 출 자: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: 경 제 과 장

1. 제정이유

남원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우수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(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)

나. 근로자 등의 복지 지원(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)

다. 기업 활동 지원(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)

라.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(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)

마. 기업지원활동 협의회 운영(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15. 4. . ~ 2015. 5. .(20일간)

- 결 과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기업"이란 본사·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(이하"시"라 한다)에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.
- 2. "기업인"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.
- 3. "근로자"라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4. "기업 관련 단체"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.
- 5. "기업 등"이란 기업·기업인·근로자·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.
- 6. "첨단산업"이란「산업발전법」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7. "지식기반산업"이란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8 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남원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중요성 및 기업인의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며, 기업인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,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
제2장 우수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

- 제4조(기업 등에 대한 포상)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노사화합,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제5조(예우 대상)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(이하"우수 기업인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 - 1. 시 및 전라북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을 받은 기업인이나 근로자
 - 2.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표창을 받은 기업 등
 - 3.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 이
- 제6조(예우 및 지원)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
 - 2.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
 - 3.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
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
 -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5조에 의해 우수기업인으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- 제7조(제외대상)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.
 - 1.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 - 2.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
 - 3. 업종 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4. 그 밖에 사회통념상 기업윤리 등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
- 제8조(관리)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전담 공무원에게 우수기업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장 근로자 등의 복지 지원

- 제9조(근로자 복지 지원) 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「남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」에 따라 수혜 중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한다.
- 제10조(노동단체 지원) 시장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노동단체가 노사화합과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·문화 활동 등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1조(기업 관련 단체 지원) ① 시장은 기업 상호 간 협력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장 기업 활동 촉진

- 제12조(기업 활동 지원) 시장은 기업의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창업보육센터, 창업박람회, 창업동아리 운영 및 설비투자
 - 2. 청년 미취업자 고용 및 인력양성

- 3.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산업 단지 조성 및 기술 개발
- 4.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
- 5. 국제화 추진을 위한 수출입 진흥 및 외국기업과의 협력 증진
- 6. 자체 부담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
- 7.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
- 제13조(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물품·용역 및 공사(이하 "제품"이라 한다)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제품 구매 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 설치)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(이하 "사이버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사이버센터는 알림마당, 기업지원정보, 기업정보, 지역경제, 취업정보,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하며, 기업관련 정보를 전달한다.
 - ③ 사이버센터에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하여 기업 관련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처리한다.

제5장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

- 제15조(센터의 설치)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(이하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센터에는 기업 관련 민원을 신속・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, 센터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- 제16조(센터의 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입지, 창업, 각종규제 등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결
 - 2. 기업애로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문가와 기업 후견인제 운영

- 3. 인력 및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지원 사업 발굴
- 4. 시 기업활동지원협의회 운영 등
- 제17조(기업도우미 배치) ① 시장은 기업의 경영전략, 사업분석, 마케팅 및 판로 개척, 생산관리 등 컨설팅을 위하여 변호사, 대학교수, 경제계, 금융계 등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 중에서 기업 컨설팅에 참여한 실적을 근거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장 기업활동지원 협의회 운영

- 제18조(협의회의 설치) 시장은 기업 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·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지원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있다.
- 제19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3.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 · 개선에 관한 사항
 - 4.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20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기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
 - 2.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
 - 3. 금융기관 임직원
 - 4. 시 의회 의원
 - 5. 시 소속 공무원

- 6. 그 밖에 지역경제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업지원 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기업지원 담당주사가 된다.
- 제21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.
 -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⑤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- 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⑦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 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2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한다.
 - 1. 해당 업체의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
 - 2.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
 - 3.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할 수 있다.
- 제23조(위원의 위촉 해제)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-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- 4.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- 제24조(수당지급 등)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남원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보칙

제25조(다른 조례의 준용) 보조금의 집행·정산 등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2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**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**
- 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- 제3조(작성대상)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 이 경우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입법예고사항에	대한	의견서
---------	----	-----

예고내용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

의 견 <u>성</u> 명 (개인/단체)

전화번호

제출자 주 소

검토의견(의견 제출내용)

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제출자

(서명 또는 인)

남 원 시 장 귀하